

2026. 7. 9.(목)
보도시점 협약식 시작(10:00) 이후

배포

2026. 7. 8.(수)

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환경 위한 업무협약

-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강혜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 감액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월 9일(목) 오전 10시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마약류 검사제도 도입('25년)*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류 검사 이행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마약류 검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5. 1.)

** (협약 적용 대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종(긴급돌봄, 일상돌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지원) 제공인력,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등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협약일(7.9.)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을 제공하며, 검사 종류에 따라 마약류 검사는 약 30~45%, 건강검진은 약 20~49% 수준의 감액 혜택이 적용된다(붙임3).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붙임4)를 통해 이러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은 의료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 협약에 따른 비용 감액 혜택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임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라며, “이번 협약이 현장 종사자들의 검사 부담 완화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위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은 ‘돌보는 이가 건강해야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협력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전국 검진 연결망을 활용하여 종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개요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3. 협약에 따른 검사 금액(마약류 검사, 건강검진)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현황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책임자	과 장	이지은 (044-202-322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044-202-3224)



□ 추진목적

- 마약류 검사·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행사개요

- (행사명)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 (일시·장소) 2026. 7. 9.(목), 10:00, 중앙사회서비스원 영상회의실
- (협약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
- (주요 참석자)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위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등
- 협약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지원
 - 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권 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관련 안내·홍보 및 정보 제공
 -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

□ 세부일정

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 참석자 소개	
10:05~10:20	(‘15)	• 인사말	
10:20~10:50	(‘30)	• 협약 주요내용 설명 및 환담	
10:50~10:55	(‘5)	• 업무협약 체결	
10:55~11:00	(‘5)	• 마무리	

1 긴급돌봄 지원사업

- (목적) 긴급·일시적인 돌봄 사각지대에 대응하여 국민 돌봄불안 해소
- (지원 대상) 주돌봄자 부재,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서비스 내용)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지원규모) 최대 72시간(하루 최대 8시간) 이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 30일 내 사용 권고

※ 단,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 가능(72시간 이내)

2 일상돌봄 서비스

- (목적) 가족돌봄청(소)년 및 취약 청·중장년 대상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
- (지원대상) 가족돌봄청(소)년(~39세) 및 취약 청·중장년(13~64세)
* (주요 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서비스 내용) 기본(재가 돌봄·가사) 및 특화(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 서비스 제공('23.8.~)
- (지원 규모) 기본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기본 1년 지원

< 서비스 이용 유형 >

구분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가능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형 (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가능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가능

③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목적) 중앙정부 주도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기획·운영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비만아동 및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350여 개 서비스 제공 중
 - 중앙정부가 제시한 표준모델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수정(가격, 내용 등) 하여 사용하거나, 지역 자체적으로 신규서비스를 개발
-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및 지원규모는 서비스별 상이

④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04~)
- (서비스 내용) 저소득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가정에 방문서비스(신체수발지원, 건강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지원
- (지원 규모) 기본 1년 동안 서비스 필요 등에 따라 지원(월 24시간/27시간/40시간 등)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③희귀난치성 질환자(복지부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 ④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 보호 세대)의 자녀·손자녀 ⑤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부상 장기 치료자 등 인정하는 자

붙임3

협약에 따른 검사 금액(마약류 검사, 건강검진)

□ 마약류 검사

○ 협약에 따른 검사 금액

구분	기존금액		합계		협약 금액	감액률	비고
	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TBPE 검사	8,100원	10,000원	18,100원	→	5,180원	71.4%	진찰비 별도 납부 필요 (‘26년도 9,820원)
Drug test 4종	28,000원	10,000원	38,000원		20,180원	46.9%	
Drug test 6종	32,000원	10,000원	42,000원		25,180원	40.0%	
Drug test 40종	40,000원	10,000원	50,000원		30,180원	39.6%	

○ 마약류 검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내용
TBPE 검사	마약 선별을 위한 체외 진단 검사, 마약의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1차 스크리닝(양성유무) 검사
Drug test 4종	코카인, 아편, 대마, 필로폰 검사
Drug test 6종	4종 검사 + 향정신성 의약품 2종 검사(엑스터시, 암페타민)
Drug test 40종	마약 5종 + 대마 + 향정신성 의약품 34종 검사

□ 건강검진

○ (기본건강검진) 협약에 따른 검사 금액 및 세부항목

구분	기존금액		협약 금액	감액률	비고
기본건강검진*	33,740원	→	27,000원	20%	혈압, 혈당, 요당, 체중, 시력 및 청력, 흉부 방사선 촬영 등

* 국가건강검진 기본 검사항목과 동일(성·연령별 추가 검사 및 암검진 제외)

○ (종합건강검진) 협약에 따른 검사 금액 및 세부항목

구분	기존금액		협약 금액	감액률	비고
30형	590,000원	→	300,000원	49.1%	공통검진 항목(90개) + 선택 검진 항목은 유형별 상이
45형	890,000원		450,000원	49.4%	

붙임4**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현황' 26년 6월 기준**

구분	지부명	주소	전화번호
1	서울서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35 (화곡6동 1097)	02-2600-2000
2	서울동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용두동 112-1)	02-3290-9800
3	서울강남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프라자(신천동 7-18) 3층	02-2140-6000
4	부산동부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 (온천2동 1438-2)	051-553-6400
5	부산서부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230 (감전동 157-7)	051-601-9700
6	대구	대구시 동구 장등로 16(신천3동 128-1)	053-757-0500
7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6(구월동 1123-2)	032-890-8700
8	울산	울산시 중구 변영로 360 (학산동 75-5)	052-241-2000
9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조원동 779)	031-250-5800
10	강원	춘천시 남춘로 50 (효자2동 363-7)	033-260-0800
11	충북·세종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봉명동 725)	043-297-1100
12	대전·충남	대전시 서구 계룡로 611 (탄방동 90-8)	042-532-9890
1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덕진동1가 1408-3)	063-259-8900
14	광주·전남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32 (농성동 638-11)	062-363-4040
15	경북	대구시 북구 팔달로 23(노원동3가 523-3)	053-350-9000
1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06	055-259-0200
17	제주	제주시 연북로 111 (연동 1375)	064-740-0200